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

(소형준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

(소형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28일

발의자 : 고영옥, 김경이, 김육영, 박영섭,
소형준, 양순임, 오중균, 이용진,
이호건, 임태근, 정기혁, 정병기,
정해숙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 ~ 안 제6조까지)

라.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7조)

마.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)

바.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및 처우개선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
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,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문화체육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4. 3. ~ 2025. 4. 8.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생활체육”이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.
2. “생활체육지도자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

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)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
2.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
3.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
4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)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
2.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
3.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·연구
4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지방자치단체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